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979

2016년 2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6. 2. 5. 우창윤 의원 발의

【발의자 1명, 찬성자 21명】

2. 회부일자 : 2016. 2. 11.

3. 상정일자 :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6년 2월 26일 상정· 의결(원안 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우창윤 의원)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명칭 및 위치, 지원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시민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입을 증대하고, 좀 더 의미 있고 실효성 있는 교육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구분(안 제6조의2 신설)
- 나.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시민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된 사용료 등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도록 함. (안 제6조의3 신설)
- 다. 지원시설 사용료 감면 (안 제6조의4 신설)
- 라. 지원시설 사용료 반환 (안 제6조의5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50 플러스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태호)

1 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2015.04.02. 공포)」에 근거를 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50⁺ 캠퍼스'와 '50⁺ 센터'로 구분하여 추진 함에 따라 시설별 기능 차별화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자 제안되었음.
- 또한 장년층(50세 이상 65세 미만)의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등을 위한 프로그램 확충 등 기능 강화에 따라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2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필요성 및 추진 현황

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필요성

- 장년층에는 제1차 베이비부머 세대('55년~'63년 출생세대)를 포함하는 바, 베이비부머 세대는 주로 만 50대에 해당하며, 2012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서울시 50대 인구가 150만명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장년층은 기존의 어르신 세대(65세 이상)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 바,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과 경제활동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어르신 세대
 보다 더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약 70%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에 거주 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2013년말 기준으로 146만명으로써 어르신세대(115만명)보다 많음.

- 또한 장년층의 핵심을 이루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70.9%가 노후에도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근로 의욕이 높은 편지만, 이미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있는 청년문제와 다양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어르신 세대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소외된 계층에 해당함.
- 장년층은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활동에 관심이 높은 편으로, 60세 이후 자원 봉사 참여의사가 43.9%에 이르고 있지만, 50대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문제와 노후 준비 등의 이유로 인해 실제 자원봉사 참여율은 7.3%에 머물고 있음.
- 전반적으로 볼 때, 장년층은 ① 은퇴와 노후에 대한 정보와 교육 부족, ② 일자리 불안, ③ 사회공헌 활동 기회 부족, ④ 건강 우려와 문화·여가 기회 부족 등 걱정과 불안감이 큰 세대라고 할 것임.
- 그러나 베이비부머 세대를 비롯한 장년층은 높은 교육수준과 경륜 및 전문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적극 활용해야 인적 자산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바, 장년층의 요구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활용가치로 연결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정책과 이를 수행할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나.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추진 현황

- 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부는 인생이모작 지원 시설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1자치구 1시설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집행부는 권역별 총 5개소의 '50⁺ 캠퍼스'와 지역별 20개 곳의 '50⁺ 센터'를 추진 하고 있음.(참고자료 참조)

- 그러나 50⁺ 센터에 대한 연도별 확충계획 대비 추진실적은 저조하다고 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추진계획 재설정과 예산 반영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 연도별 50⁺ 센터 확충 계획은 아래 표와 같으나, 실제 추진 실적을 보면 2014년 1 개소[(종로(시립))], 2016년 3개소[(동작구(구립), 영등포구(구립), 노원구(구립))에 그 치고 있음.



3 주요사항 검토

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구분(안 제6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6조의2(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구분)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
	치·운영하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
	다.
	1. 50플러스캠퍼스 : 장년층의 다양한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광역거점 시설
	2. 50플러스센터 :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 전달체계 강화 및 주
	민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거점시설

- 집행부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권역 단위와 자치구 단위로 구분하여 각각 50⁺ 캠퍼스와 50⁺ 센터에 차별화된 역할과 기능을 분담하고자 한 바,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음.
- ※ 50⁺ 캠퍼스 : 약 5,000㎡, 권역·거점 단위, 교육 포함, 광역적 복합 기능
 50⁺ 센 터 : 약 1,000㎡, 자치구 단위, 교육 기능 중점, 지역 특화

나. 사용료 부과 근거 규정(안 제6조의4)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6조의3(사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수
	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
	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정안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개관에 따라 지원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시민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
- 집행부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별로 연 18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바, 이 중 약 74개의 과정(인생재설계, 커리어모색, 자기계발과정 과목군)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강당 및 교실 등의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유료 대관 원칙을 적용할 방침임.
- 다만 사용료의 감면 조항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및 실업 급여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이용을 위한 접근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사용료의 감면조항을 마련하였음. (안 제64조의4 참조)
- 한편, 개정안의 '사용료'란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를 말하는 것으로, 집행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여부의 결정을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음.

- 이러한 사용료를 규정하는 방법으로는 ① 확정금액으로 정하는 방법, ② 최고액을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규칙 등 하위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 최고액과 최저액을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규칙 등 하위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 ④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근거만을 두고 구체적인 금액은 규칙 등 하위 법령에 규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사용료의 구체적 금액을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정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조례에서 직접 금액을 규정할 경우 탄력적인 사용료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번 개정안과 같이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근거만을 두고 구체적인 금액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겠음.
- 또한 개정안은 징수한 사용료 등을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수입 예산에 편입 시켜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다른 용도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운영의 내실화를 제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보임.

다. 사용료 반환 규정(안 제6조의5)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6조의5(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사용자가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개정안은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반환할 수 있는 내용으로, '부당이득'의 법리를 주의적으로 반영한 것 으로써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하겠음.

참**파**료 50⁺캠퍼스 및 50⁺센터 건립 현황

□ 「50⁺캠퍼스」권역별 총 5개소 (단계별, 연차별 추진)

○ 1단계(시행중): '16년 2개소(도심, 서북)→'17년 1개소(서남)

구 분	위 치	현 공종	건 축 규 모	사업비 (억원)	건립기간
서북 (은평) 리모델링	서울혁신파크 8동 舊 국립보건원 (통일로 684)	내부공사 (공정률40%)	- 연면적 : 3,956㎡ - 층 수 : 지하1 지상4 ※ 1~4층 리모델링	36	´15.3~ ´16.3 (2단계'17.6)
도심 (마포) 리모델링	舊산업인력공단 별관동 (백범로 31길21)	철거공사 (공정률40%)	- 연면적 : 4,509m² (전체 10,830m²) - 층 수 : 지하1, 지상4 (전체 지하2, 지상10)	156	′14.7~ ′16.10
서남 (구로) 신축	오류동 천왕2지구 사회시설부지 (오류동 156-193외2)	가설공사 (공정률5%)	- 연면적 : 5,714,㎡ - 층 수 : 지하3 지상4	286	′13.8~ ′17.7

○ **2단계**(시행예정): '18년 1개소(동북)

구분	위 치	현 공종	건 축 규 모	사업비 (억원)	건립기간
동북 (도봉) 신축	도봉구 창동1-8 (청소차량차고지)	설계용역 사전협의	- 연면적 : 5,600㎡ - 부지면적 :7,663㎡(2,200) - 층 수 : 지하1, 지상6	153	′15.10~ ′18.12

○ **3단계**(시행예정): '18년 1개소(광진)

구분	위	치	현 공종	건 축 규 모	사업비 (억원)	건립기간
광진 신축	광진구 ス 57-153(학	가양동 교용지)	투자심사, 공유재산	- 연면적 : 5,000㎡ - 부지면적 :3,577㎡(1,877) - 층 수 : 지하1, 지상5	333	′16.1~ ′18.12

□ 「50⁺센터」현황(지역별 총 20개소 확충)

구분	자치구	위 치	층 수 (지상/지하)	규모(m²)	준공일(예정)
시립	종 로	수표로26길28 (돈의동 68)	총5개층	1,053	'14. 5월
구립	동작구	노량진로140 (노량진동 57-1)	총1개층	1,391	'16. 2월
구립	영등포	여의도동 56-1 (자매근린공원 옆)	총2개층(4/2)	1,188	'16. 4월
구립	노 원	노원로30길 73 (상 계 동 181-14)	총5/1층	1,192	'16. 6월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없음」

VI. 심사결과: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7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의2(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구분)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50플러스캠퍼스 : 장년층의 다양한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광역거점 시설
 - 2. 50플러스센터 :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 전달체계 강화 및 주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거점시설
- 제6조의3(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면제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면제
-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면제
- 4.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면제
- 5. 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자치구는 제외한다)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 6. 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단체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 제6조의5(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사용자가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시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화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6조의2(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구
	분)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운
	영하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은 다음
	<u>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u>
	1. 50플러스캠퍼스 : 장년층의 다양한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기회 확대
	를 위한 광역거점 시설
	2. 50플러스센터 : 장년층의 인생이모
	작 지원 전달체계 강화 및 주민접근
	성 제고를 위한 지역거점 시설
<u><신설></u>	제6조의3(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사용
	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
	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
	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
	<u>는 아니 된다.</u>
<u><신설></u>	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
	은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생
	이모작 지원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

거나 줄일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면제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 족: 면제
-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으로 등록된 자 : 면제
- 4.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면제
- 5. 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자치구는 제외한다): 기본시설 사 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 6. 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단체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제6조의5(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사용 자가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 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시용하 지 못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